

2013년 장애인복지정책



경기복지재단
양희택 책임연구원

(*본 자료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RI Korea 신년정책토론회 발표자료를 수정하였음*)

목차

I

장애인복지의 이해

II

장애인복지 정책 비전 및 기본방향

III

주요정책 추진계획

IV

경기도 내 주요과제

I . 장애인복지의 이해

1 장애의 개념 및 패러다임 변화

장애의 개념

- '80년 WHO는 심신의 손상 (impairment),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능력 제한 (disability), 사회적 결과인 불리 (handicap) 로 정의

장애개념의 변화

과거	현재
분리된 삶	정상화된 삶
전통적인 의료적 모델	사회적 모델
전문가 주도	당사자 주도

장애인 정의

- (장애인복지법) 장애인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

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

- (헌법)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
- (장애인복지법)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

장애인복지 환경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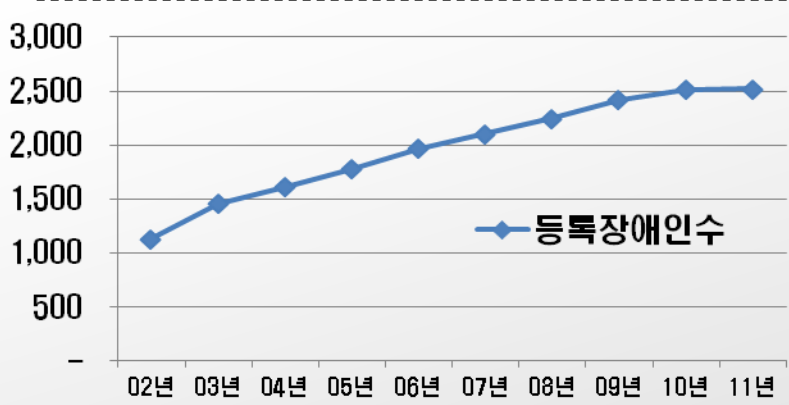
정책패러다임의 변화

구분	기존정책 패러다임	새 정책 패러다임
명칭	복지 패러다임	권리 패러다임
정책 모델	의료적 모델	사회적 모델
정책 목표	물리적 안정	완전한 사회참여

2 장애인 현 주소

❖ 등록장애인 지속적 증가('11년 12월말 현재 252만명, 전체 인구대비 5%)

▪ 장애유형 확대, 고령화 등으로 등록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, 증가율은 둔화



[단위 : 천명, %]

연도	02년	03년	04년	05년	06년	07년	08년	09년	10년	11년
장애인수	1,129	1,454	1,611	1,777	1,968	2,105	2,247	2,419	2,517	2,519
증가율	-	22.3	9.7	9.3	9.7	6.5	6.3	7.1	3.9	0.1

❖ 취약한 소득수준, 낮은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제약요인 ('11년 장애인 실태조사)

-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(198만원), 전국가구소득(371만원)의 53.4%에 불과
- 장애인취업률(36%)는 전체 국민 취업률의(60%)의 59% 수준
-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28%가 타인의 도움 필요(도와 주는 사람 84.2%가 가족구성원)
-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미흡/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전체적으로 “많다”는 응답이 80.7%

Ⅱ. 장애인복지정책 비전 및 기본방향

비전	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기본 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 ➤ 장애인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
------------------	--

과제	장애인 정책과제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주요
추진
과제

- ① 장애등록 판정제도 개선..
- ②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
- ③ 장애인연금·장애수당 지원 내실화..
- ④ 장애인 일자리지원 확대·내실화..
- 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..
- 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기능 강화
- ⑦ 장애인활동지원제도..
- ⑧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수립
- ⑨ 발달재활서비스 확대..
- 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확대·개편..
- ⑪ 장애인보조기구 지원..
- ⑫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개편 방안 마련..
- ⑬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원..
- ⑭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..
- ⑮ 권역재활병원 기능활성화..
- ⑯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보호..

비전

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



정책과제

4대 분야 19대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

 <p>장애인 복지·건강서비스 확대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2.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3.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4.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5.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
 <p>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·체육 향유 확대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2. 특수교육 지원강화 3.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4.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5.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
 <p>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2.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3.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4.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
 <p>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2. 장애인 이동·편의 증진 3.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4.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5.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

과제

누락된 과제

고령화 된 장애인 지원

소수장애인 지원

장애범주 확대

Ⅲ. 주요 정책 추진계획

1 장애등록 판정제도 개선

사업 개요

- 장애인 현황 파악과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을 위해 '88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등록사업 실시
['11년 12월 현재 등록 장애인 수 2,519천명/ 장애유형 15개, 장애의 중증도에 따라 6등급 구분]
 - '11. 4월 장애등급심사 전면 실시 이후 의사는 장애상태만을 진단, 등급심사결정은 장애심사센터(국민연금공단)

현황 및 개선방향

- (현황) 장애계 및 학계는 현 장애등록판정제도가 **의학적상태를 중심으로 장애를 인정하는 것**에 대해 개선 요구
 - 의학적 판단 외에 장애인의 사회·환경적 요인과 개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등록판정체계 요구
 - 장애 정의와 개념의 근본적 재정립 절차 필요<의학적 상태<현재> ▶ 사회환경의 맥락에서 장애 발생<개선>
- (개선 방향) 장애인의 **사회·환경적 요인과 개인 욕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등록판정체계의 검토 및 도입방안 마련**

추진 계획

- 외국인(영주권자, 결혼이민자 및 재외동포) 장애인등록 시행(1월~)
-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
-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작업 지속('12년 심장장애 등 판정기준 개정)

2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시행

정책 비전

“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회 실현”

정책 목표

- ①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사회 구현
- ② 발달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가족부담의 완화
- ③ 발달장애인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립하는 기반 마련

정책 과제

1-1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체계 구축	2-1 발달장애인 특성에 따른 어려움 완화	2-2 돌봄 지원강화와 가족부담 경감	3-1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	3-2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성년후견제 조기 정착 ● 실종예방강화 및 인신매매 근절 ●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발달장애 조기 발견체계 마련 ●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● 발달장애인 건강 관리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돌봄 지원 강화 ●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 강화 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·운영(13년~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특수교육 확대 및 내실화 ● 직업교육 기회 확대 및 직종 다양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보호고용 확대 및 경쟁고용 지원 강화 ● 자립적 주거기반 마련 ● 보충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

정책 예산

성년후견인지원: 6억원(양성 2억원, 서비스지원 1억,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3억)
 발달장애인 가족지원(신규): 15억원(발달장애인 부모(2천명) 심리상담비 지원)

사업 개요

- ❖ (목적)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급여 지원을 통해 소득보장 제고
- ❖ (주요 내용) 소득 및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(경증), 장애아동수당 지원

구분	대상	급여
장애인연금	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(13년 : 단독 580천원, 부부 928천원) 이하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초급여(= A급[국민연금가입자 최근 3년간 월평균급여액의 평균액의 5% =97천원 [13년])+ 부가급여
장애수당	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경증 장애인 (3~6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초(3~2만) ▪ 차상위(3만)
장애아동수당	18세 미만 등록 장애인(1~6급)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증(기초 7~20만, 차상위 15만)/ 경증(기초 2~10만, 차상위 10만)

추진계획

- ◆ **장애인연금 현실화 추진**
 - 부가급여 인상(13년 2만원 인상)
- ◆ **장애인급여 운영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**
 - 급여지급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
 - 장애인급여 제도개선안 마련 및 지침 개정

추진예산

- ◆ **장애인연금**
 - ('12) 2,946 -> ('13) 3,440억원 (494억원, 16.8%)
 - 기초급여 9.4->9.7만원, 부가급여 계층별 2만원 인상

사업 개요

❖ (목적)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도모

· 사업추진 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 등

❖ (내용)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11,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제공

구분	행정도우미	복지일자리	안마사 파견사업
주요 업무	장애인복지사회복지 등 행정정보업무	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 (환경도우미, 주차단속 보조요원 등)	안마서비스 일자리
근무 장소	읍·면·동 시·군·구청 산하기관 등	공공기관 지역사회재활시설 등	안마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사회재활시설
근무 시간	주 40시간	월 56시간	주 25시간
근무 기간	연중(1~12월)	연중(1~12월)	연중(1~12월)
급여 수준	월 1,112천원	월 273천원	월 1,000천원
참여 기준	행정업무수행 가능한 미취업 등록장애인 (18세 이상)	미취업 등록장애인 (18세 이상)	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 (18세 이상)

추진 계획

❖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발굴 및 보급

- 대국민 공모 및 시범사업을 통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공공일자리 개발
- 장애인일자리 직종 현황조사 및 우수 일자리 아이টেম에 대한 직무매뉴얼 제작

❖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재정 지원을 통한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추진

* '12년 10,800명 → '13년 11,500명(700명 증)

❖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무조건 개선을 통한 참여율 제고

* 급여수준 인상 : 행정도우미(월 855천원→877천원→1,112천원)

복지일자리(월 200천원→259천원→273천원)

* 근로기간 확대 :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(9개월→12개월)

❖ 재정투자일자리가 일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끝나지 않도록 일반 노동시장 전이 지원

* 3년 이상 장기근로자 중심 민간일자리 취업연계

추진 예산

❖ ('12) 311- > ('13) 415억 (104억 원, 33.4%)

사업 개요

- (목적)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
 - ▶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창출 및 사회통합에 기여
- (내용) 공공기관의 물품·용역 총구매액의 1%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독려,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생산품 지원 등
 - ✓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점검·모니터링 및 교육·홍보 실시

추진 방향

-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원 및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실효성 확보 ▶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(지속적인 판로 개척)
-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엄격한 지정심사 적용 및 사후 지도·감독 강화 ▶ 우선구매 제도 및 생산품에 대한 신뢰 확보

추진 계획

-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 모니터링 실시
-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전국순회교육 및 워크숍 실시 ('13년 상하반기)
-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
추진 예산

- ['12] 670 → ['13] 1,570
- 업무수행기관 추가 지정에 따른 운영비지원(1→2개소)

사업 개요

- **[목적]** 경쟁시장에서 일자리 갖기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히 배려된 환경에서 직업생활을 하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
- **[사업내용]**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경영컨설팅 지원
 - 직업재활시설 확충, 장비 비원 및 경영진단·운영기법 전수(제품 경쟁력 강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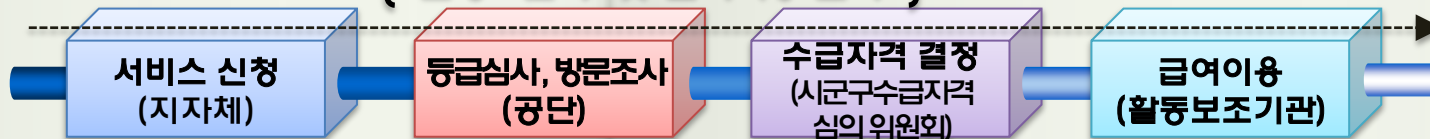
추진 내용

- 직업재활시설에 자본재적 지원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
 - ▶ 전국 30개소 직업재활시설 대상(경영, 노무, 판촉 등)
- **업종다변화 및 시설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**
 - 1차 산업 또는 3차 산업 업종 희망 시 적극지원
 - 서비스분야장애인직업재활사업단 선정

7 장애인 활동지원제도

사업 개요

- (목적) 혼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(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) 제공
 → **장애인 자립생활 지원**,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**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**
- (신청자격 및 수급자 선정) 장애인복지법상 **1급 또는 2급 장애인** 중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정도 등을 평가한 **인정점수** 기준으로 **활동지원등급(1~4급)** 판정을 받은 자
- (월 급여량) **기본급여**(활동지원등급 1~4급 89 ~ 36만원 차등 지급) + **추가급여**(독거, 출산 등 9~68만원)
 [신청·조사 및 급여이용 절차]



추진 경과

-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, 대통령공약('07년) 및 100대 국정과제 선정('08년)
-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추진단 설치 운영('08. 1월~) : 1차 시범사업('09.7~'10.1월) 실시 ▶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로 명칭변경 및 운영기관 선정, 2차 시범사업('10.9~'11.3월) 실시 ▶ 확대모형 검토
- “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” 시행 및 사업확대('11.10.5)

추진 계획

- 최종중 독거가구 등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 시행 (2013년 3월 시행 예정)
- 지역사회 기반의 중증장애인 보호체계 마련

7 장애인 활동지원제도

추진 예산

- ('12) 3,099 -> ('13) 3,829억원 (730억원, 23.6%)
- 지원 대상: 55-> 52 천 명
- * 수급자 대상확대 (장애등급 1급-> 2급)
- 활동지원급여: 평균 692-> 738.8 천원 / 월
- * 활동보조인 임금 3% 인상, 이동급여 및 추가급여 확대

추진 내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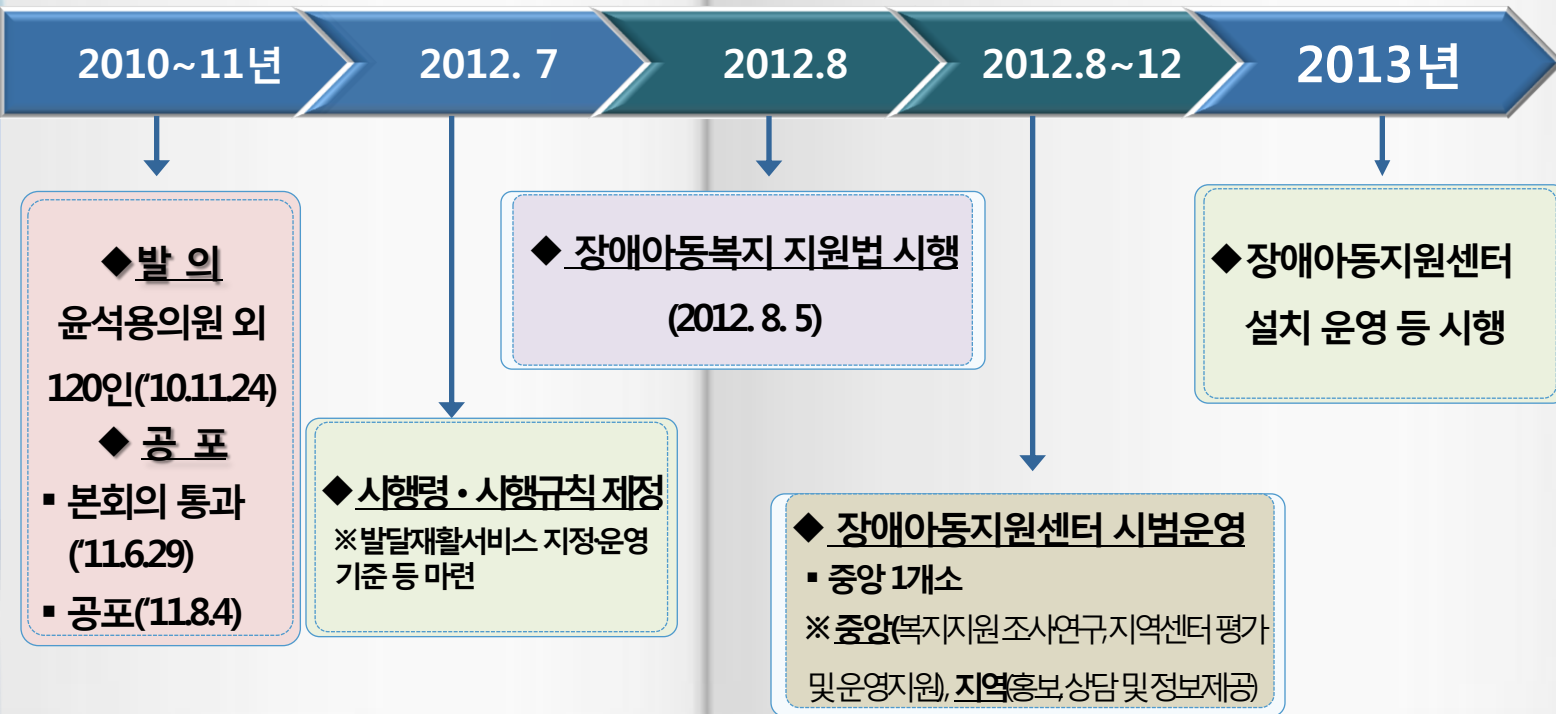
- 장애인활동지원 국회 증액(615억원) 내역
 - 최종중 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(12시간, 226억원)
 - 최종중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(48억원)
-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(551명) -> 1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(844명)
- 직장생활 등 6시간 추가급여 신설(6시간, 311억원)
- 최종중 수급자 중 가족구성원의 직장생활 · 학교생활 등에 따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추가급여 확대
- 중증장애인 보호대책 정책연구 등(30억원)

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

사업 개요

- (목적) 장애아동의 특별한 욕구에 적합한 **통합적 지원강화** 및 **그 가족 부담경감**
- (내용) 장애아동 **복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**, **장애아동에 특화된 전달체계 마련**
 - √ 의료비, 발달재활서비스, 돌봄, 가족지원 및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규정
 - √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

진행 경과 및 추진 계획



사업 개요

- (목 적)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**발달재활서비스 제공**으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(내 용) 전국가구평균소득 **150% 이하**, **만 18세 미만**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 **1인당 월 22만원(자부담 포함)**의 바우처 제공
 ✓ 언어치료, 청능치료, 미술치료, 행동·놀이·심리운동치료 등 재활서비스

추진 방향

-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내실화
 ✓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%이하로 완화하여 서비스대상을 확대하고,
 ✓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강화

추진 계획

-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(37천명→42천명)
-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정보 제공,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시험 실시,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 등 서비스 질 관리 추진

사업 개요

- (목적)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양육지원 및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안정성 강화
- (내용)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,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연간 320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
 - ✓ 양육자가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 시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,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

추진 방향

-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중증장애아동 가구에 대하여도 필요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
 - ✓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도우미의 교육시간을 완화(60→40시간)
- 지원 대상 장애등급을 확대하여 대상자 확대

추진 계획

- 소득기준 초과자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
- 지원 대상 장애등급을 1급,2급,3급 일부에서 1급,2급,3급 전체로 확대하여 대상을 2.5천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

추진 예산

- 장애아동가족지원: ('12) 567 -> ('13) 677억 원 (110억 원, 19.4%)
-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481 -> 578억 원(이용율 85% -> 95% 반영)
* 지원기준 개선: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이하(37천명) -> 150%이하(42천명)
- 장애아동 부모지원: 6 -> 7억 원
- 발달장애인 가족지원(신규): 15억 원
* 발달장애인 부모 (2천명) 심리상담비 지원

사업 개요

- (보조기구 교부) 저소득층 장애인(지체, 뇌병변, 시각, 청각, 심장)에게 12종의 보조기구 지원으로 일상 생활능력 및 사회활동 촉진
- (사례관리시범사업)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조기구 사용을 목적으로 사례관리서비스 센터를 설치·운영
→ 적합한 보조기구 안내, 사용법 교육, 수리 및 보완 서비스, 공적급여에 대한 정보 등 제공
- (품질관리) 교부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로 2차적 장애방지 및 만족도 증대
→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, 이를 바탕으로 품질적합 업소와 품목에 대한 정보 제공
- (정책지원) 시범사업, 제도개선 강화 사업, 정책개발 및 발전에 바탕이 되는 연구 등을 통해 정책 개발 및 제도 내실화 추구

추진 계획

- 보조기구교부사업 교부품목 확대
 - 교부품목을 12개→14개로 확대
- 사례관리시범사업 : '09년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업확대: ('12년) 6개소 →('13년) 7개소
- 품질관리 지원
 - 교부품목을 중심으로 업소 및 품목 등록 실시

12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개편 방안 마련

거주 중심 기능 확립 + 시설 소규모화 + 선택권 보장 ▶ 수요자의 서비스 욕구 반영
 ▶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제고 및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야기구조 개선

현행		개정안		비고
분류	종류	분류	종류	
생활시설	· 장애유형별 및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· 중증장애인 요양시설	거주시설	일반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거주시설,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	· 생활시설의 본원적 기능(주택·가정)
지역사회 재활시설	·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체육시설 등	지역사회 재활시설	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기타 체육시 설 등	· 상담·치료·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 참여활동 등 지원
유료복지 시설	· 장애인 생활시설(전액 이용자 부담)	의료재활 시설	의료재활시설 [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분 리·신설]	·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진단·판정 치 료 등의 의료재활서비스 제공

● (시설 재정립) 재활시설 일부를 거주시설로 통합 및 의료재활시설로 분리 등 **이용자 중심으로 시설 기능 재정립**

● (시설기준 개선) 복지시설의 새 분류체계에 맞는 **시설이용 및 설치기준, 인력배치기준, 시설별 사업기준 마련**

● (이용요건 완화) 장애인들이 소득수준 제한 없이 시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**이용요건 완화**

● (시설 소규모화) 거주시설 정원 30명 초과하는 기존 대규모시설을 점진적 **소규모화** 추진

사업 개요

- 가정 내 수발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에게 거주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, 장비보강 등 사업 추진
 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사업
 - 시행방법 : 지자체 보조(국비50%)
 - 시행주체 : 지방자치단체 시·도 및 시·군·구
 - 연도별 사업비 : '09(27,750백만), '10(23,450백만), '11(31,450백만), '12(30,039백만), '13(32,162백만),

추진 방향

- (인프라 확충 및 환경개선)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속적 인프라 확충
 - 신축(19개소, 108억)/ 장비보강 및 편의시설(139개소, 18억)
- (시설 소규모화 및 구조개선 지원) 시설 대규모화로 인한 이용 장애인 삶의 질 저하 등 문제점 해소
 - 신규시설 정원 30인 이하로 제한, 기존 대규모시설→그룹홈 설치 등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 유도
 - 시설구조 및 설비기준 개편(장애인복지법 개정)에 따른 개조비용 지원

추진 계획

- '13.3월~10월 : '13년 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
- '12.12월 : '14년 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 확정통보

사업 개요

- 장애인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, 설치현황 파악 및 설치 독려
-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행

< 3차(2010~2014) 계획의 주요내용 >

- 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
 - ✓ 공공시설, 주거환경, 교육환경, 작업환경, 근린생활시설, 문화시설의 편의증진
-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
 - ✓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개선, 상세표준도 제작·배포 등

추진 계획

-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등 제도 개선('13년)
 - 편의시설 적합성 심사의무화, BF제도 근거 마련, 시설주 대상 편의시설 교육 근거 마련
- '13년도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
- 편의시설 설치 상담·기술 지원 및 편의증진 담당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(장애인개발원 주관)
 -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검토 및 수정안 제시
 -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, 장애인 체험, BF, 장애인 보조기구 이해 교육

사업 개요

- **6개 권역에 건립중인 권역 재활병원의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**
 - ✓ 국립재활원+권역재활병원+지역사회재활시설을 연계, 적시에 재활치료 서비스 공급
 - ▶ **장애의 최소화** 유도(6개 권역 : 인천, 경남양산, 광주, 춘천, 대전, 서귀포)
 - ✓ **장애유형별 맞춤형 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** 및 권역재활병원의 연구교육 기능 강화

추진 방향

- **전문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재활전문병원으로 육성**
 - ✓ 장애발생 후 성공적인 **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목표로**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활전문병원으로 방향을 유도

추진 계획

- **재활사업 연계체계 구축**
 - ✓ 권역별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방문재활 등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 제공
- **권역재활병원 포괄적 재활의료서비스 제공**
 - ✓ 전문재활치료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의 표준화체계화 시행, 사회복귀 프로그램 제공

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 효율성 제고

- 인권침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 지원
-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지원
-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예방교육 실시
-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 확대·설치

장애인차별 금지법 이행 지원모니터링 실시

- 4차 모니터링 차질 없이 완료('12.4~'12.10)
- 1~3차 모니터링 이해 미흡기관 지원 상담반 운영
- '13년 편의제공 의무 신규기관 5차 모니터링 실시
- 이행을 저조기관 재모니터링 실시

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

- 거주시설 내 '인권지킴이단' 설치·운영
-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, 내부고발기능 강화
-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례화
- 인권침해사례 발견 시 형사고발 조치

장애인 인식개선 홍보·교육

- 중앙 및 지자체 '12년 실적 및 '13년 계획 제출
- 기관별 실적 점검 후 미흡기관 거점교육
- 장애인의 날 등 계기성 집중홍보 실시

과제

경기도 내 주요 과제

주요
과제

- ① **장애인 인권**
-(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연구용역사업 완료),
인권센터 운영
- ② **발달장애인 지원 거점기관 필요성 대두**
-(장애아동지원법, 발달장애인법 등)
- ③ **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필요성 인식**

감사합니다



경기복지재단